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의 압류 금지〉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550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의 압류 금지	2

I. 개요

1.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55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2. 17.

(3) 회 부 일 : 2024. 12.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배분한 금품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와 같이 개인 사유로 인하여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자의 경우 배분 금품의 압류를 우려하여 주민센터 계좌를 동원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및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음을 법률에 규정하여 복지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의 압류 금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24조의2(압류금지)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u>

나. 검토의견

□ 현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하여, 일정한 배분 기준 및 배분신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¹⁾으로 하고 있음.

또한 제3조(기본원칙)에서는 공동모금재원은 지역·단체·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되어야 하고, 제1조의 목적 및 제25조에 따른 용도(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 활동)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배분규모) ‘23년 기준, 8,305억원을 모금하여 기관 27,942개소, 개인 430,239명에게 총 7,446억원을 배분함

< 분야별 배분현황 >

구분	지원액(억원)	비율(%)	지원건수(건)	지원기관수(개소)	지원인원(명)
기초생계지원	3,882	52.1	646,841	11,416	390,945
교육/자립지원	939	12.6	44,771	2,245	16,048
주거/환경개선	615	8.3	11,566	4,234	5,638
보건/의료지원	450	6.1	16,499	1,535	12,818
심리/정서지원	382	5.1	5,232	2,140	1,535
사회적돌봄강화	755	10.1	11,276	3,837	2,164
소통과참여확대	240	3.2	1,527	994	10
문화격차해소	183	2.5	3,573	1,541	1,081
총 계	7,446	100	741,285	27,942	430,239

자료: 보건복지부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러한 법의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할 때,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 및 이를 받을 권리를 배분대상자가 아닌 제3자가 압류하는 것은, 국민들이 사회복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성한 재원이 사회복지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동법 제27조²⁾에서는 기부금품의 기부자가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부금품을 단순히 배분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용 결과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48조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³⁾하고 있음.

다만, 동 조항은 압류금지에 대한 포괄적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별 법률에서 압류금지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7조(기부금품의 지정 사용) ①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지가 이 법의 목적·취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이 법의 목적·취지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기부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모금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모금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그 사용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48조(압류 금지) 이 법 및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유사입법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영유아보육법」 등이 있음.

< 개별 법률에서 별도 규정을 둔 유사 입법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35조(압류 금지) ①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장애인연금법」

- 제19조(압류 금지 등) ①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이나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

- 제82조(압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하지 못한다.
②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 제59조(수급권 보호) 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영유아보육법」

- 제34조의2(양육수당) ⑤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⑥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유사입법례를 살펴보면, 개정안과 같이 압류금지 근거만을 두는 방식과 압류 금지 근거 마련과 더불어 별도의 전용수급계좌를 두도록 하는 입법례가 있음.

예컨대, 「영유아보육법」의 경우 압류금지 근거만을 두고 있어 개정안과 같은 형식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은 특정급여 수급계좌 근거⁴⁾를 추가하여 두고 있음.

- 이와 같이 특정급여의 수급계좌를 두도록 한 입법형식은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지급된 금품과 다른 금원이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수급자의 예금채권이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압류방지를 위한 ‘특정급여수급계좌’ 근거를 압류금지 조항과 함께 법률에 규정한 것임.⁵⁾

□ 또한, 현행법에 따라 금품을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는 대상자의 신청에 따른 심사를 통해 부여되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보이므로, 당초 권리를 부여한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될 여지를 배제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임.

□ 따라서 유사입법례를 고려할 때 개정안에서도 특정급여수급계좌 및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금지와, 권리의 양도·담보 금지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현재 은행 약관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자전용계좌 (행복지킴이 통장)’가 운영되고 있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①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에는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만이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좌 입금이나 현금 지급 등의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10.6. 결정 99마 4857)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배분을 받는 자는 재난·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공공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으로,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다만, 배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조문으로 그 위치를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의 뒤로 하고, 공동모금재원을 배분받을 권리에 대해 양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개정 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압류방지통장 적용을 위해서는 지급 관련 전산망 개선 및 참여 은행의 약관 변경 등 사전 준비과정이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유사 입법례 및 판례를 참고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7